

「스토킹처벌법」, 「성폭력처벌법」, 「전자장치부착법」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

- 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미성년·장애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, 반의사불벌죄 폐지, 온라인스토킹 유형 신설,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스토킹범죄 엄정 대응을 위한 「스토킹처벌법」, 「성폭력처벌법」 등 개정 -

- 오늘(6. 21.) 스토킹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「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,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개정안, 「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

<「스토킹처벌법」 개정안 주요내용>

▶ 반의사불벌죄 폐지 ▶ 온라인스토킹 유형 신설(개인정보 등 게시·배포, 온라인 사칭) ▶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▶ 피해자 신변 안전조치 및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▶ 잠정조치 기간 연장 등

<「성폭력처벌법」 개정안 주요내용>

미성년·장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▶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▶ 법원·수사기관 보호조치 노력의무 신설 ▶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부여 특례 신설 ▶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 확대(現 13세 미만 → 19세 미만) ▶ 법원이 공판 준비절차 통해 신문사항 미리 확인 ▶ 중계시설(영상) 증인신문 시 최초 영상녹화 장소 등 아동친화적 장소에서 실시 원칙 규정 등

<「전자장치부착법」 개정안 주요내용>

▶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 대상 범죄에 ‘스토킹범죄’ 추가 (現 성폭력, 미성년자 유괴, 살인, 강도에 한정) ▶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에 따른 집행 절차 정비

-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“이 법은 스토킹이 범죄가 아니었던 시기에 스토킹을 범죄라고 주장하고, 대중에게 냉소받고, 스토킹에 희생당한 분들의 마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. 정부는, 그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이 법을 집행하겠습니다”라고 말했습니다.
- 법무부는 개정 「스토킹처벌법」 등 시행을 통해 스토킹,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, 앞으로도 여성, 아동·청소년 등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 중심의 형사 사법제도를 마련해나가겠습니다.

1. 개정 배경

스토킹처벌법,전자장치부착법

- 스토킹범죄는 감금·납치 등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, 살인 등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스토킹 단계에서부터 행위자를 엄정하게 처벌하고, 강력하게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.
- 법무부는 그간의 법 시행 경과와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,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, 신변안전조치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「스토킹처벌법」, 「전자장치부착법」 개정안을 마련하여 '23. 2. 15.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.

성폭력처벌법

- 헌법재판소가 '21. 12. 23.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「성폭력처벌법」 조항에 대하여,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하여, 미성년 피해자들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측의 공격적인 반대신문에 노출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.

- 이에 법무부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「성폭력처벌법」 개정안을 마련하여 '22. 6. 29.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.

※ 국회에서 정부안을 비롯하여 관련 의원발의 개정안이 함께 논의되어 대안 통과

2. 주요 내용

가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

구분	주요 내용
스토킹행위자 처벌 강화	▶ 반의사불벌죄 폐지 ▶ 온라인스토킹 행위 유형 신설 - 온라인상 개인정보·위치정보 제3자 제공 및 게시·배포, 온라인 사칭 행위 ▶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▶ 긴급응급조치 위반 및 이수명령 불응시 형벌로 강화
피해자 보호 확대	▶ 긴급응급조치·잠정조치 보호 대상 확대(동거인, 가족) ▶ 잠정조치 기간 연장(현행 최장 6개월 → 최장 9개월) ▶ 피해자 및 신고자 신변안전조치 도입 ▶ 피해자 신원 등 누설 금지 ▶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
잠정조치 등 관련 절차 보완	▶ 사법경찰의 잠정조치 취소·변경·연장 신청 근거 신설 ▶ 잠정조치·긴급응급조치 취소·변경·연장 시 피해자 통지 ▶ 검사·사경이 피해자로부터 잠정조치 요청받고도 잠정조치 청구·신청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 통지

(1) 스토킹행위자 처벌 강화

반의사불벌죄 폐지

- 현행법상 반의사불벌죄* 규정에 따라,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2차 스토킹범죄 또는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빈발하여,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.

*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함

‘온라인스토킹’ 처벌규정 확대

- 온라인에서 상대방의 개인정보·개인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·배포·게시하거나 상대방의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 유형으로 추가하였습니다.

※ 스토킹처벌법상 처벌 공백 있던 소위 ‘SNS 지인 능욕방’, ‘온라인 사칭 행위’도 스토킹행위로 처벌할 수 있게 됨

잠정조치에 ‘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’ 신설

- 현행법상 잠정조치인 접근금지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단이 없어, 접근금지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잠정조치에 가해자에 대한 ‘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’을 도입하여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※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납치하는 등 보복범죄 방지 가능

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벌 신설

-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제재를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강화하였습니다. (과태료 1천만원 이하 ⇒ 징역 1년 이하, 벌금 1천만원 이하)

※ 과태료는 행정제재에 불과하고, 위반행위 이후 실제 부과까지 수개월이 걸려 스토킹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으로 기능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

(2)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

긴급응급조치·잠정조치 보호 대상 확대

-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의 가족, 동거인에게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·잠정조치 보호 대상에 피해자의 동거인과 가족도 포함시키도록 하였습니다.

잠정조치 기간 연장

- 수사·재판 과정에서 장기간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기간을 현행 기본 2개월(2회 연장 가능, 최장 6개월)에서 기본 3개월(2회 연장 가능, 최장 9개월)로 연장하였습니다.

‘신변안전조치’ 등 피해자 보호 강화방안

-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.
 - (신변안전조치)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「범죄신고자법」에 따른 보호조치(특정시설에서 보호, 신변 경호, 보호대상자 주거 순찰 등)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 - (신원 등 누설 금지) 수사기관·법원 또는 언론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·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, 위반시 형사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.
 - (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)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.

(3) 잠정조치·긴급응급조치 취소 등 관련 절차 보완

- 경찰 수사단계에서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사경이 검사에게 취소·변경·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.
- 잠정조치·긴급응급조치가 취소·변경·연장된 경우 피해자가 변경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피해자 통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.
- 검사,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로부터 잠정조치 청구·신청을 요청받고도 잠정조치 청구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.

나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개정안

구분	주요 내용
진술조력인 및 전담조사제 확대	▶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의 지원 대상 확대 (현행 13세 미만 → 19세 미만) ▶ 성폭력 전담 검사·사법경찰관의 교육 내용에 아동 심리 및 아동·장애인 조사 면담기법 추가
19세미만등 성폭력 피해자*에 대한 보호조치	▶ 진술을 듣는 절차가 타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 ▶ 아동 친화적 설계 장소에서 조사 및 증인신문을 실시할 것 ▶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접촉하거나 마주치지 않도록 할 것 ▶ 조사 및 심리·재판 과정에 대해 명확하고 충분히 설명할 것 ▶ 그 밖에 피해자 보호·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
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규정	▶ 증거보전기일(반대신문권이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로 한정), 공판준비기일 등에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 ▶ 사망, 외국거주, 신체적·정신적 질병·장애 등 사유로 공판준비기일 등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 영상녹화물에 증거능력 부여(피고인과의 관계, 증언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외상 등 고려)
공판준비절차 특례	▶ 법원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검사, 피고인 등에게 증인신문 사항을 미리 제출토록 할 수 있게 함 ▶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, 피고인 등으로부터 신문사항과 신문방법 등에 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함

증인신문 장소 등 특례 규정	▶ 피해자가 법원에 중계시설을 통한 신문 여부, 출석 장소 등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 ▶ 중계시설을 통해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, 기존에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조사가 이루어진 장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(예외적인 경우 법원이 중계시설 지정)
검사의 증거보전** 청구 의무화	▶ 19세미만등 피해자 등의 증거보전청구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의 증거보전 청구 의무화

* 19세미만등 성폭력 피해자 : 19세 미만 미성년 피해자와 신체적·정신적인 장애로 심신미약한 성폭력범죄 피해자

** 1회 공판기일 전에 미리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판사 앞에서 증인신문 등 증거 조사를 하는 절차

다. 「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

○ 현재 살인·성폭력·강도·미성년자 유괴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하였습니다.

- ▶ 징역형 실형 + 출소 후 최장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가능
 -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범죄자에게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판결 선고
- ▶ 집행유예 선고 시 법원 명령으로 최장 5년 범위에서 전자장치 부착
- ▶ 법원은 부착명령 선고 시 “피해자 등 접근금지”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

○ 「스토킹처벌법」 개정으로 스토킹행위자의 잠정조치에 전자장치 부착이 도입됨에 따라 집행 방법 등을 마련하였습니다.

- ▶ 스토킹행위자는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
- ▶ 보호관찰소의 장은 스토킹행위자가 ‘피해자 접근금지’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지
- ▶ 통지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여 사유를 확인하고, 유치 신청 등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

3. 향후 계획

- 개정 법률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. 다만, 시행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잠정조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된 조항(「스토킹처벌법」 및 「전자장치부착법」)만 공포 6개월 후, 형 집행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된 조항(「전자장치부착법」)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.
- 이번 「스토킹처벌법」, 「전자장치부착법」 개정으로 스톱킹행위자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, 피해자 보호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, 「성폭력처벌법」 개정으로 피해자 친화적인 수사·재판 절차가 도입되어 특히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-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고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해소하는 법·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☐

담당 부서	검찰국 형사법제과	책임자	과장	윤원기 (02-2110-3560)
		담당자	검사	남소정 (02-2110-3695)
담당 부서	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	책임자	과장	민덕희 (02-2110-3340)
		담당자	사무관	반기리 (02-2110-3334)